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489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48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박현식, 유선경

변론 종결2022. 4. 22.

판결 선고2022. 5.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번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6. 접수 제2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번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 11. 30.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D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약이 무효라면, 피고들은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의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이 사건 분할협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G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인 H이 3/9,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각 2/9의 비율로 망 G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D은 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인 $1/9 (= 1/2 \times 2/9)$ 지분을 초과하여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친 피고들을 상대로 각 $1/18 (= 1/6 - 1/9)$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와 소외 M, N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되어 말소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는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일 뿐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더구나 원고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이 본안사건이고, M, N는 모두 위 각 가처분 후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피고들 내지 H을 상대로 D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철

판사송주희

판사박애경

별지